

2002. 12. 13.(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1. 예산(안) 편성방향

-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 신규사업의 억제와 유사사업의 통·폐합 교육청 단위의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하여 낭비요인 제거
-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 총액 배분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운영
- 학교운영 우수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중 학력제고 우수교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단위학교별 책무성 제고

2. 예산(안) 편성기준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 제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소질 계발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활동비 지원
- 우수한 학생 조기 발굴·육성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과 직업 교육 확충 등의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학교도서실 활성화
-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 학교운영비 인상지원 및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3. 예산(안) 총괄

가. 예산(안)규모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9.9%인 877억 2,260만원이 증액된
9,746억 2,1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 예산은 2002년도는 2001년도 대비 6.0%인 392억 4,207만원,
2003년도는 2002년도 대비 9.5%인 662억 3,2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역교육청 예산은 2002년도는 2001년도 대비 22.9%인
354억 3,303만원, 2003년도는 2002년도 대비 11.3%인 214억
9,00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표1]

예산규모증감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 년도별	2001	2002	2003	증 감 (%)		
	①	②	③	①:②	①:③	②:③
합 계	81,222,395	88,689,905	97,462,165	9.2	20.0	9.9
본 청	65,775,216	69,699,423	76,322,678	6.0	16.0	9.5
지역교육청	15,447,179	18,990,482	21,139,487	22.9	36.9	11.3

나. 세입예산(안)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 국가부담수입이 8.2%인 605억 3,167만원,
-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50.8%인 316억 2,0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은 2.8%인 24억 2,1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지방교육채,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는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음.

[표2]

(단위 : 만원)

구 분	년도별			증 감(%)		
	2001 ①	2002 ②	2003 ③	①:②	①:③	②:③
국가부담수입	66,140,254	73,692,622	79,745,789	11.4	20.6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4,241,700	61,730,276	66,522,044	13.8	22.6	7.8
지방교육양여금	11,424,545	11,665,732	12,802,600	2.1	12.1	9.7
국고지원금	474,009	296,614	421,145	△37.4	△11.2	42.0
지방자치단체일반 회계부담수입	8,407,663	8,573,794	8,331,604	2.0	△0.9	△2.8
법정전입금	8,382,700	8,541,694	8,323,115	1.9	△0.7	△2.6
비법정전입금	24,963	32,100	8,489	28.6	△66.0	△73.6
지원금	0	0	0	0	0	0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	6,674,478	6,222,696	9,384,771	△6.8	40.6	50.8
재산수입	75,126	58,254	66,886	△22.5	△11.0	14.8
입학금및수수료수입	4,061,905	3,534,415	3,146,994	△13.0	△22.5	△11.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2,171	21,775	16,491	△1.8	△25.6	△24.3
잡수입	368,900	365,286	754,400	△1.0	104.5	106.5
이월금	2,146,376	2,242,966	5,400,000	45	151.6	140.8
지방교육채	0	0	0	0	0	0
주민기부금부담수입 및 기타	0	200,793	0	0	0	0
주민부담금	0	0	0	0	0	0
기타지원금	0	200,793	0	0	0	0
합 계	81,222,395	88,689,905	97,462,164	9.2	20.0	9.9

다. 세출예산(안)

○ 관별세출예산(안)

2003년도 관별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 학교교육 10.1%인 294억 3,877만원,
- 문화 및 평생교육 32.6%인 4억 3,647만원,
- 급여·복지 10.8%인 596억 1,247만원,
- 교육행정 37.4%인 67억 9,97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 기타경비 32.9%인 85억 6,48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표3]

(단위 : 만원)

구 분 \ 년도별	2001	2002	2003	증 감(%)		
	①	②	③	①:②	①:③	②:③
학교교육	23,697,949	29,018,368	31,962,245	22.5	34.9	10.1
유치원	270,772	386,043	512,096	42.6	89.1	32.7
초등학교	9,598,945	9,097,887	13,654,569	△5.2	42.3	50.1
중학교	6,011,986	9,866,287	7,757,155	64.1	29.0	△21.4
고등학교	6,807,041	8,551,326	8,836,188	25.6	29.8	3.3
특수학교	1,007,992	1,110,446	1,193,543	10.2	18.4	7.5
기타학교	1,213	6,379	8,694	425.9	616.7	36.3
문화및평생교육	110,733	134,010	177,657	21.0	60.4	32.6
급여·복지	52,884,853	55,121,652	61,082,899	4.2	15.5	10.8
급여관리	47,436,796	49,708,171	55,738,400	4.8	17.5	12.1
복지·후생	5,448,057	5,413,481	5,344,499	△0.6	△1.9	△1.3
교육행정	1,212,898	1,816,384	2,496,354	49.8	105.8	37.4
교육위원회	33,783	33,301	38,634	△1.4	14.4	16.0
선거관리	0	15,570	19,054	0	0	22.4
교육청	563,748	1,030,813	971,017	82.8	72.2	△5.8
지역교육청	384,576	412,340	417,426	7.2	8.5	1.2
교육지원기관	230,791	324,360	1,050,223	40.5	355.1	223.8
기타경비	3,315,962	2,599,491	1,743,010	△21.6	△47.4	△32.9
지방채상환	844,308	1,542,600	1,242,743	82.7	47.2	△19.4
제지출금	0	0	0	0	0	0
예비비	2,471,654	1,056,891	500,267	△57.2	△79.8	△52.7
합 계	81,222,395	88,689,905	97,462,165	9.2	20.0	9.9

○ 성질별 세출예산(안)

2003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 인건비 12.4%인 482억 3,417만원,
- 물건비 13.8%인 164억 2,014만원,
- 경상이전비 13.3인 330억 2,528만원,
-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22.4%인 3,484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으며,
- 자본지출경비 2.3%인 24억 9,960만원,

- 보전지출 18.2%인 19억 2,600만원,
-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2.7%인 55억 6,624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음.

[표4] (단위 : 만원)

구 분 \ 년도별	2001	2002	2003	증 감(%)		
	①	②	③	①:②	①:③	②:③
인 건 비	37,850,984	38,802,882	43,626,299	2.5	15.3	12.4
물 건 비	11,097,344	11,923,519	13,565,533	7.4	22.2	13.8
경상이전	22,515,363	24,875,581	28,178,109	10.5	25.2	13.3
자본지출경비	7,287,050	10,957,863	10,707,903	50.4	46.9	△2.3
보전지출	0	1,057,600	865,000	0	0	△18.2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0	15,570	19,054	0	0	22.4
예비비및기타	2,471,654	1,056,891	500,267	△57.2	△79.8	△52.7
합 계	81,222,395	88,689,905	97,462,165	9.2	20.0	9.9

4. 검토의견

- 21세기는 흔히들 지식정보화사회, 무한경쟁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따라서 교육기반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도 교육행정도 교육진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벗어나 우리경제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2003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계부채증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 소비심리 위축으로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제7차교육과정의 충실, 학교장 중심의 재정운영제 확립, 제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 지속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취약한 입장에서 소모성, 경직성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제안서류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규정된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으나,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경우 교육청 재정이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여 운영한다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전 수정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수정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예산서식편제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 순으로 세출은 “학교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급여·복지, 교육행정, 기타경비” 순으로 되어 있으나

도의회 예산심의를 위해 제출한 예산(안)은 세출의 경우 실·국별로 편제되어 있어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어렵고 동일 사업예산을 분산 수록함으로써 사업별, 부서별로 총체적 비교·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세 입

1) 지방교육세 전입금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충척북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고,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 또한 추가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출입금의 증감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도의 일반회계 예산안에서는 788억 8,275만원의 전출금을 계상한 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833억 1,604만원의 전입금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44억 3,329만원의 전입금을 과다 계상하였는 바
- 이는 도에서의 지방교육세의 목표액보다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예견할 수도 있겠으나 만일 추가 징수가 안될 경우 세입 결합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출입금을 계상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세전·출입금계상내역

(단위 : 만원)

충청북도일반회계 세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차액
과목	예산액	과 목	예산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888,275	법정전입금 (시·도세,지방 교육세전입금)	8,331,604	443,329

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국가부담수입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으로 6,652억 2,04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937억 5,038만 8천원보다 285억 2,994만 6천원이 감소하였는바

감소한 내역과 향후 부족되는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재산매각수입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미계상 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의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경상적 운영경비의 인상율을 감안 시·도 별로 적정수준의 인상률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년대비 47억원을 감액 계상 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세 출

1) 경상적 경비 과다계상

- 경상적 경비는 최소 한도의 소요경비만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p42)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 총규모의 81.8%가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세입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 2001년도 대비 59.1%가 증액된 점은

- 당초예산 총규모대비 예산 증가율 9.9% 그리고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증액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적경비 계상내역

(단위 : 만원)

년도별 비목별	2001	2002	2003	증 감(%)		
	①	②	③	①:②	①:③	②:③
합 계	1,442,181	1,800,072	2,294,146	24.8	59.1	27.4
관서운영비	1,194,692	1,542,445	1,985,131	29.1	66.2	28.7
여 비	154,881	164,950	207,349	6.5	33.9	25.7
업무추진비	92,608	92,677	101,666	0.1	9.8	9.7

2) 반복지적 미시정 사항

- 매년 예산 심의시마다 시정 요구되는 사항으로
 - 예산편성시 초·중학교 예산의 교과서 무상지급, 교육환경개선 부대비, 교육과정개편 설계비, 교육과정개편 부대비, 7차 교육과정 연수 등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 단가, 물량 등 산출 근거를 표시하지 않고 예산 총액만을 기재하는 등 산출근거가 불분명함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까.

3) 사업비 책정 또는 지원기준의 불합리

초등학교 교과연구회 지원과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동일사업 이지만 청주는 1교당 평균 1,524천원, 청원은 1교당 평균 50만원, 단양은 1교당 평균 80만원 등으로

지역교육청에 따라 지원기준이나 사업책정 방법이 다르므로 형평성 및 객관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연구회 지원

교육청 구 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사업량(교)	21	15	1	12	12	-	7	13	8	13	5
사업비 (백만원)	32	15	1	6	6	-	4	7	6	13	4

4) 인건비 예산

2003년도 인건비 예산중

교원은 2001년 9월보다 2002년 9월 현재 366명이 증가하고 일반직은 8명이 감소하였으나

2003년도에 요구한 인건비는 금년도 추경시까지 인건비보다 294억 7,047만 2천원이 증액된 4,362억 6,298만 5천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고

교원 전문직, 일반직에 대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27억 1,819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는 바 인건비 예산은 증액하면서 부담금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5) 사학지원비

매년 예산 심의시 사학지원비 증액지원에 대하여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학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증액 지원됨에 따라 충북지방교육 재정운영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은

교육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년도별 사학지원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		%		%		%		%		%
예산총액	636,620	100	752,743	100	812,224	100	886,899	100	974,622	100		
사학지원비	46,484	7.3	55,350	7.4	65,086	8.0	78,914	8.9	92,447	9.5		

6) 운영수당

공무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수당예산은 아래표의 일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근거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상의 근거에 의거 계상하여야 하나 계상근거가 모호하고 객관적 기준도 의문시되며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비 고
○ 유치원교사 교육활동 연구대회		
- 연구계획, 현장수업 심사수당	40	
○ 나의주장발표, 글짓기, 그리기대회	30	
- 심사수당		
○ 외국어회화대회		
- 출제수당	30(객관식)	
- 문제선정심의 수당	45(주관식)	
- 문제편집수당	10	
- 심사수당, 감금, 녹음자료제작수당	30	
- 채점수당	20	
○ 국어학력경시대회		
- 관리, 감독, 채점요원수당	30	
- 출제수당	45(주관식)	
○ 외국어학력경시대회		
- 말하기평가 출제수당	45	
- 말하기평가 심사수당, 감독수당	30	
- 채점수당	20	
○ 교사음악회 심사수당	40	
○ 교사미술작품전 심사수당	40	
○ 교직원체육대회 심판수당	20	
○ 초등수학·과학경시대회		
- 출제, 감독, 채점수당	30	
- 선정심의수당	45	

7) 설계비, 시설부대비

- 지방의회 부활 후 예산심의 시마다 매년 반복 지적되고 집행부에서 시정 약속 답변하였으나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서(제178쪽)에 의거

설계비, 시설부대비는 시설예산에 따라 그 적용율이 다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적정금액을 계상 하였는지 검토하기 어려워

- 2002년 11월 14일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여 2002년 11월 19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바

교육비예산 사항설명서 307페이지 학교증개축시설의 61건에 대해서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분석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15, 16페이지 첨부자료 참조

8) 시·군교육청예산

시·군교육청별로 같은 사업을 하면서 단위사업별 산출물량, 단위와 지원기준이 각각 달라 비교, 검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교육청별로 단위, 단가 등 산출기초에 통일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